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7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박홍배·이정현·박정현  
민병덕·안도걸·김우영  
이수진·김문수·박해철  
김남근·한준호·김영환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그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와 같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주는 일정한 예외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족돌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과는 달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사업주가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단축 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가족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제8호의2 신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3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22조의3제1항(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